



7 새찬송가위원회 보고

제106회기 새찬송가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정훈
서 기 윤두태

1. 조직

- 위원장 : 김정훈 목사
- 서 기 : 윤두태 목사
- 회 계 : 이홍렬 목사
- 위 원 : 김종준 목사, 서기영 장로, 조경행 목사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1. 8. 24(화) 12:00

☞ 장 소 :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한국찬송가공회 업무 관련 문제를 논의하다. 새찬송가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한국찬송가공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다.
- ② 공회 사무실에서 전체 이사회를 열자고 개편찬송가위원회 측에 요청하기로 하고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1. 12. 14(화) 11:30

☞ 장 소 :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지난번 회의에 따라 위원장이 개편찬송가위원회 측에 요청하였으나 전체 이사회를 열지 못하였고, 상대측의 요구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하다.
- ②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승소한 이후 항고건을 잘 대비하기로 논의하다.
- ③ 현안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대응 방안을 세워 적극 임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2. 1. 26(수) 11:30

☞ 장 소 :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공회 자산을 압류한바 있는 (재)대한기독교서회에 공회가 2차례나 해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공회를 어렵게 만들어 신의칙을 버린 일과, 또한 인세를 미납한채 찬송가를 위법으로 출판 하는 등에 항의하여 공문을 보내기로 하고, 향후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다.
- ② 기본재산 사용으로 인해 어려운 공회의 실정을 (주)예장출판사에 공문으로 알려 선인세 등 협조

를 구하기로 하다.

- ③ 전체 이사회가 새찬송가위원회측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차 개편찬송가위원회 측에 요청하기로 하고 이 일을 위원장과 협상단에 일임하다.

(4) 제5차 회의

☞ 일 시 : 2022. 5. 12(목) 16:00

☞ 장 소 :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재)대한기독교서회가 제기한 출판금지가처분(2020카합21920)이 대법원 까지 예장출판사가 승소하였음을 보고받다.
- ②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2021라234)이 기각 결정되었고, 재항고하지 않아 2022년 5월 3일 확정되어 승소하였기에, 김정훈, 윤두태 이사의 직무집행의 합법성을 인정받았으므로 향후 한국찬송가공회 업무에 차질없도록 다하기로 하다. 또한 새찬송가위원회 위원 전체 이름으로 엄중하게 대처하여 법적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만전을 다하기로 하다.
- ③ 충남도청 문화유산과의 요청과 민원 등에 대응하여 충남도의 교계 인사들과의 미팅, 정계인사들과의 접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을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하기로 하다.

3. 주요사업 및 결의내용

- 1) 한국찬송가공회가 현안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새찬송가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2) 저작권 및 출판 계약 관련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여러 재판에 잘 대응하여 한국교회 성도들과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하다.
- 3) 찬송가 음원에 대한 저작권 관련 사업 및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찬송가 관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한다.
- 4) 한국찬송가공회와 관련된 재판에 법무법인을 통해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찬송가 발행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대응한다.
- 5) 한국교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찬송가를 출간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 진행하여, 적절한 시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 6) 최근 공회 관련 문제와 경과
 - ① 1981년 설립된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통일찬송가'를 통해 한국교회 하나의 찬송가를 보급하여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2006년 '21세기 새찬송가'를 발간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찬송가 출판 보급에 앞장서왔다.
 - ② 2008년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설립됨으로 갈등이 있어 한국교회의 염려가 있었으나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 ③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 40여년간 설립시부터 양 위원회인 새찬송가위원회측과 개편찬송가위원회(한국찬송가위원회, 이하 개편위)측 소속 교단들이 모여 공동 운영(공동 이사장제)을 해왔다. 이러한 설립정신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별첨1) 지금까지의 모든 정관은 전체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또한 과거 40여년간의 역사가 증명한다.(별첨2)



- ④ 그런데 공회 정관 8조에 의해 새찬송가위원회측 교단중 합동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를 받지 않음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설립정신과 공회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 ⑤ 이는 개편위측 통합교단 이사들을 중심으로 되어진 일이었다. 상호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연합 사업에 분란을 야기한 것이다.
- ⑥ 개편위원회측(통합교단 이사들 중심)은 이에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재판정까지 끌고가서 합동 교단 파송 이사들은 자격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새찬송가위원회측 합동교단이 파송한 이사들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 ⑦ 예장출판사는 한국찬송가공회와 계약서(정관, 합의서)에 의거하여 출판을 해왔다.
- ⑧ 그런데 대한기독교서회는 자신들의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려고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또한 예장출판사가 대법원(가처분)에서 승소하였다.
- ⑨ 찬송가는 한국교회의 자산이다. 한국찬송가공회는 설립시의 공동 운영의 정신이 잘 유지되어야 하며 상호존중의 연합을 통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별첨 1] 관련 공회 정관 일부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성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인

제8조 (임원의 선임)

4. 임원은 본 법인의 전신인 한국찬송가공회의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교단배정 임원수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공동이사장)

1. 공동이사장은 법인을 공동으로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6. 공동이사장의 교단 배정은 전례대로 한다.

제24조 (출판권)

법인이 발행하는 찬송가는 본 법인의 전신인 한국찬송가공회 설립시의 합의 정신에 따라, 교단연합기구인 (재)대한기독교서회와 (주)예장출판사에서만 출판하되, 단 양측은 3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세부사항은 공회규칙을 따르기로 한다.

제34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6조 (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단 제8조4항과 제12조6항 및 제24조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본 법인은 전신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본 정관은 2017년 5월 16일, 6월 13일 개정시 찬송가공회 이사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개정되었음.



[별첨 2] 한국찬송가공회 조직 도표

새찬송가위원회						개편찬송가위원회(한국찬송가위원회)							
합동1	합동2	합동3	합동4	예감	루터	통합1	통합2	기감1	기감2	기성	기장	기침	고신
이영수	배태준	한석지	박성만	신신목	지원상	김소영	x	박봉배	x	김현명	박재봉	김용도	민영환
이영수	배태준	한석지	박성만	신신목	지원상	김소영	이의호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상근	김용도	민영환
이영수	배태준	한석지	박성만	신신목	지원상	김소영	이의호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상근	김용도	민영환
이영수	배태준	한석지	박성만	신신목	지원상	김소영	이의호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상근	김용도	2
한석지	배태준	이영수	박성만	신신목	지원상	김소영	오병수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상근	김용도	2
김현중	배태준	이봉학	김인득	신신목	지원상	김소영	오병수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상근	김용도	2
김현중	배태준	이봉학	김인득	신신목	지원상	김소영	오병수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상근	노창우	2
이봉학	배태준	이성택	김인득	신신목	지원상	문전섭	오병수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상근	노창우	2
이봉학	배태준	이성택	김인득	신신목	지원상	김광식	장옥태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상근	노창우	2
이봉학	배태준	이성택	김인득	신신목	지원상	김광식	장옥태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박은규	노창우	2
이봉학	배태준	이성택	김인득	신신목	지원상	김광식	장옥태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지수	강창석	최해일
이봉학	배태준	이성택	김인득	신신목	지원상	김광식	장옥태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지수	강창석	심근식
최기채	최낙현	김덕신	이춘근	신신목	지원상	이상운	3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지수	강창석	심근식
김덕신	최낙현	최기채	이춘근	신신목	지원상	이상운	김수진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지수	강창석	심근식
한명수	김중철	김중석	서기행	신신목	3	이상운	최기준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김지수	강창석	심근식
한명수	김중철	김중석	서기행	신신목	지원상	이상운	최기준	박봉배	서형선	김현명	진중섭	강창석	심근식
한명수	김중철	김중석	서기행	신신목	허 송	이상운	최기준	박봉배	서형선	권석원	김현식	강창석	심근식
한명수	김중철	송정현	서기행	신신목	허 송	김홍규	최기준	박봉배	서형선	전희준	김활용	강창석	심근식
한명수	김중철	송정현	서기행	신신목	허 송	김홍규	소의수	박봉배	서형선	전희준	김활용	양희협	심근식
서기행	류재양	송정현	황원택	신신목	허 송	김홍규	소의수	박봉배	서형선	전희준	박희서	양희협	정금출
한명수	류재양	황원택	홍 광	신신목	허 송	김홍규	소의수	엄문용	서형선	권석원	박희서	도한호	정금출
한명수	류재양	황원택	홍 광	신신목	이홍렬	김홍규	양운국	엄문용	백형부	권석원	김활용	도한호	정금출
임태득	장상만	서기행	김용길	신신목	이홍렬	김홍규	양운국	엄문용	백형부	권석원	김활용	김용도	정금출
서기행	류재양	임태득	장상만	신신목	이홍렬	김홍규	양운국	엄문용	백형부	권석원	박희서	김용도	정금출
임태득	류재양	황승기	최병용	신신목	이홍렬	김홍규	양운국	엄문용	백형부	권석원	이종률	김용도	정금출
황승기	류재양	박무용	최병용	신신목	이홍렬	이광선	양운국	엄문용	백형부	권석원	이종률	양희협	김국호
황승기	남승찬	박무용	최병용	신신목	이홍렬	이광선	양운국	안종원	1	권석원	김성수	김용도	김국호
서정배	박춘근	최재우	김부영	신신목	이홍렬	이광선	양운국	안종원	1	박용삼	1	김남수	김정일
서정배	박춘근	최재우	김부영	신신목	이홍렬	이광선	양운국	안종원	1	박용삼	1	김남수	김정일
서정배	박춘근	최재우	김부영	신신목	이홍렬	이광선	양운국	안종원	1	김춘규	1	김남수	김정일
서정배	1	1	김부영	이명구	이홍렬	지용수	문성모	1	1	김춘규	1	김남수	김정일
서정배	1	1	김부영	이명구	이홍렬	강무영	문성모	1	1	김춘규	1	김남수	김정일
서정배	1	1	김부영	이명구	이홍렬	강무영	문성모	1	1	김춘규	1	김남수	김수관
서정배	윤두태	박무용	신신우	이명구	이홍렬	강무영	문석모	전용재	1	전병일	윤기원	1	김수관
박무용	윤두태	김정훈	신신우	이명구	이홍렬	강무영	오창우	전용재	정지강	전병일	윤기원	1	김수관
박무용	윤두태	김정훈	신신우	이명구	이홍렬	강무영	오창우	정명구	정지강	유동선	윤기원	박대선	김수관
박무용	윤두태	김정훈	서기영	이명구	이홍렬	이승철	오창우	전명구	정지강	유동선	윤기원	박대선	오병욱
김정훈	윤두태	김종준	서기영	조경행	이홍렬	이승철	오창우	손인선	김승룡	신상범	박유철	박대선	오병욱
김정훈	윤두태	김종준	서기영	조경행	이홍렬	이승철	오창우	손인선	김승룡	신상범	박유철	박대선	오병욱
김정훈	윤두태	김종준	서기영	조경행	이홍렬	이승철	오창우	손인선	김승룡	신상범	박유철	박대선	오병욱

* 1- 찬송가공회와 파송교단들 간의 분쟁으로 교단에서 이사 불파송, 2-불법출판으로 유보, 3-파송(채용)중의 예외적 공석이 있으나 언제나 다시 원상복귀하였음.